

배아생성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 등에 관한 기준(제17조제1항 관련)

1. 시설기준

- 가. 방진시설(먼지제거 및 공기공조 장치)
- 나. 환기장치
- 다. 난자채취실
- 라. 정자채취실
- 마. 진료실

2. 장비기준

- 가. 초음파기기
- 나. 무균상자(Clean Bench)
- 다. 이산화탄소 배양기
- 라. 현미경 [ICSI(세포질 내 정자주입술)를 수행할 경우에는 미세세포조작기(Micromanipulator)를 포함한다]
- 마. 냉장고 및 냉동고
- 바. 난자 흡입기
- 사. 원심분리기
- 아. 항온판
- 자. 세포 계수기
- 차. 잠금장치가 부착된 배아보관용 액체 질소탱크(LN₂ tank)

3. 인력기준

- 가. 산부인과 전문의 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문의나 일반의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.
 - 1) 3년 이상 배아생성 관련 기술을 계속 하였을 것
 - 2)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아생성교육을 수료하였을 것
- 나. 배아생성 관련 기술을 보조하는 간호사 또는 경력 2년 이상인 간호조무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.
- 다. 가목에 따른 의사를 도와 정자 및 난자를 채취수정한 배아의 배양, 보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.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 간에 배아생성 담당인력을 공유할 수 있다.
 - 1) 배아생성 관련 분야의 경력이 2년 이상일 것
 - 2) 3년제 이상의 대학에서 의학·생물학·수의학·발생공학·축산학·유전공학·분자생물학 또는 임상병리학 등의 배아생성 관련 학과를 이수한 사람일 것